

대 법 원

제 2 부

판 결

사 건 2018재다50483 소유권말소등기
원고(재심피고) 주식회사 A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산경
담당변호사 유돈교, 박선주
피고(재심원고) 1. B
2. C
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온
담당변호사 김형선
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7다212385 판결
판 결 선 고 2020. 3. 12.

주 문

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재심소송비용은 피고(재심원고)들이 부담한다.

이 유

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.

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재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.

그러므로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	대법관	안철상
-----	-----	-----

	대법관	박상옥
--	-----	-----

	대법관	노정희
--	-----	-----

주심	대법관	김상환
----	-----	-----